

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40일
신청인	업체명		성명(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 주소		사업장 전화번호		사업장 팩스번호
	공장 주소		공장 전화번호		공장 팩스번호
	자체정기검사 등록분야				

지정신청 품목 및 규격	
-----------------	--
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자체정기
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검사요원 및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. 검사업무규정 1부	수수료 「계량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」 제 52조에 따라 국 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
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 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
위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생년월일: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서류 검토	➔	현장 평가	➔	결 제	➔	지정증 발급
--------	---	-----	---	-------	---	-------	---	-----	---	-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계량업무 담당 부서)